

## [EU] 저작권 보호위해 제품 복제 횟수 제한

유럽연합(EU)은 8일 음반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업체들이 제품 복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역내 업체들은 자사 제품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음반이나 소프트웨어를 일정 횟수 이상 복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기술 도입에 나선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EU 국가들은 현행 저작권 보호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3년간 협의를 벌여 왔으며, 업계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한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 EU가 범유럽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업계는 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이번 EU 방침에 대해 실효성을 문제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예외 항목이 많으면 저작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국제음반산업연맹은 지난 98년 전세계에서 팔린 해적판 음반이 45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출처 서울경제

국내 기업의 특허와 상표 등 지재산 침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72건, 중남미 30건, 중동·아프리카 17건, 북미와 유럽 각 13건 등 모두 145건에 이르고 있다.

침해 사례는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지역 등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대만에서는 위조상품 불법 제조, 유통이, 중남미에서는 상표 무단 선등록이 각각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1997년 7월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산 관련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설치한 '해외 지재산 애로신고센터'를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국내 기업의 지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주기적인 해외 지재산 피해 사례 실태조사와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 대응에 나서는 한편 주요 침해 발생국 담당기관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공세적인 지재산 보호 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 지재산 보호기능 강화는 이 같은 노력 이외에도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허청 자체 노력과 더불어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개도국 진출 국내기업 지재산 침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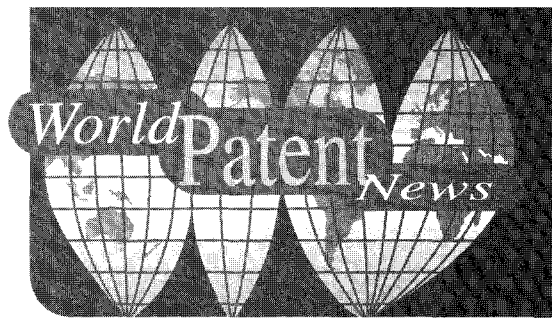
중국·동남아·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한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해외 진출

## 美·日·EU, 바이오 특허 주도권 다툼 치열

인간의 유전자 연구 등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일본 특허청은 14~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전문가회의에서 미국정부에



인간유전자 특허심사에 대해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도입하자고 요청키로 했다.

일본과 유럽은 같은 발명품이라도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반면 미국은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

앞으로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쉽게 특허를 인정하는 편이다.

1990~98년 세계 유전자관련 특허출원은 미국이 66%로 가장 많고 유럽 20%, 일본 12%로 불균형을 이룬다.

지금처럼 가면 미국기업이 유전자관련 특허를 거의 독점하게 될 것이 뻔하다.

지난달 9, 10일 영국에서 열린 선진 6개국 특허청장 비공식 회담에서도 일본측은 “인간 유전자 관련 연구 성과는 단순 염기배열의 해석보다는 특정 질병이나 체질의 원인이 되는지를 입증했을 때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가국의 공감을 얻었다.

생명공학 관련 시장은 98년 기준 일본 1조엔(약 10조원), 미국 1조4000억엔, 유럽연합(EU) 2조 7000억엔 규모이며 앞으로 20년 후에는 25배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동아일보

## WIPO, 유명인사 이름 도메인 사용 규제

유엔 산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2일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는 ‘도메인 무단점거자(Cybersquatter)’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WIPO 중재 센터는 이날 ‘프리티 우먼’ 등의 영

화로 널리 알려진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을 딴 도메인 ‘juliaroberts.com’의 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로버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유명한 이름들을 도메인으로 등록, 판매하는 미국의 ‘러셀 보이드’라는 사람이 로버츠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하면서 일어났다.

유명한 영화배우인 줄리아 로버츠를 찬미하는 마음으로 문제의 도메인 주소를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러셀 보이드는 “로버츠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법적인 상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11월 ‘juliaroberts.com’을 등록한 보이드는 ‘eBay’ 사이트 상에서 이 도메인 주소를 경매에 부쳐 2천500 달러의 가격을 제시받았으나 거절했다. 보이드는 현재 영화 ‘대부’로 널리 알려진 알파치노의 이름을 딴 ‘alpacino.com’ 도메인 주소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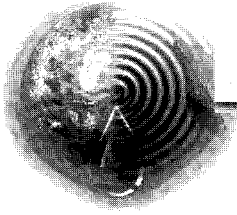
보이드는 “만약 로버츠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도메인 주소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WIPO 중재 센터는 보이드가 문제의 도메인 주소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며 줄리아 로버츠에게 도메인 주소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도메인 무단점거자가 활개칠 수 있는 것은 전세계 누구라도 약 100달러만 지불하면 웹주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명 인사나 기업의 이름을 딴 도메인 주소를 선점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높은 가격에 팔게 된다.

WIPO에 따르면 유명 가수인 지미 헨드릭스와 TV 쇼 진행자인 조니 카슨의 이름을 딴 ‘jimmyhendrix.com’, ‘jonnycarson.com’ 도메인 주소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EU, 공동 특허제 가시화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 특허제도가 가시화 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을 겪어온 EU 공동 특허 제도에 관한 입법안을 오는 7월 심의회 결정이라고 집행위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EU공동특허제도는 EU 회원국별로 각기 특허를 얻지 않고도 이 특허만으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한 것으로 특허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는 공동 특허 제도를 통해 특허 분쟁을 다룰 기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허 취득 및 등록 비용을 크게 낮추도록 하는 한편 부담이 과중한 특허 서류의 번역 문제를 간소화해 비용을 대폭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EU 공동 특허는 기존의 15개 회원국별 개별 특

허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는 '유럽특허'와 병행해 사용토록 기안되고 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특허 제도도 마련 중이다.

EU는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으나 특허 분야는 15개 회원국이 각기 고유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쟁 대상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유럽국들은 지난 73년 뮌헨 협약을 체결, 유럽특허청(EPO)을 발족시키고 '유럽특허'를 도입했으나 각 국별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 시키지 못해 효율성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의 공동 특허 제도 입법은 각국의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지난 89년 조인된 룩셈부르크 유럽특허협약이 아직 회원국 절반의 비준도 얻지 못하는 등 각국별 이해 관계 대립으로 지연돼 왔다.

출처 연합뉴스

## 2005년부터 온라인 국제특허 출원 시행

오는 2005년부터 온라인과 CD롬 등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이 시행되고 2010년부터 전자출원이 전세계적으로 의무된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회원국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특허법 조약 최종안을 최근 타결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2005년 6월 2일부터 세계 각국의 특허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는 전자출원과 병행해 서면 출원도 접수되지만 2010년부터는 개도국들도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